

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9. 화순군수
 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9. 26
 - 다. 상 정 일 자 : 2001. 9. 26
- (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김 종 철

나. 개정사유

- 화순군청민원실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설치와 읍.면의 인증기를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인증기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제정비 요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제4항에 인증기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【별표1】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삽입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따라 민원실 창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, 이에대한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규정키위한 개정 조례안임.
- 화순군공인조례와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과 함께 본 조례가 보완 개정되어야만 무인민원발급 체계가 갖춰질수 있을것이며, 제증명

민원발급 시스템의 선진화로 인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리라 전망되어짐.

- 입법예고 및 조례.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징수방법)①~③ (생략) ④(신설)	제5조(징수방법)①~③(현행과 같음) ④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 한다.